

2024년도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시스템 운영 기간제근로자 (촉탁라급)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수행업무	근무지
환경	촉탁라급	1명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강원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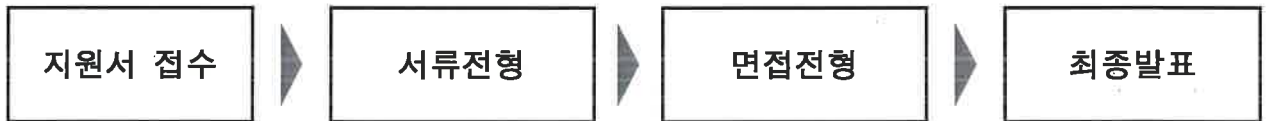
2. 근로조건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4.12.31.까지
근무시간	· 주5일(월~금), 전일제(근무 9~18시, 휴식 12~13시)
보수수준	· 기준급 1,830,480원/월, 상여금 215,460원/월 · 그 외 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직무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4대보험	· 가입
복무 등 기타사항	· 공단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자격요건
공통사항	① 공단 촉탁라급 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②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④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⑤ 임용예정일('24년 3월 초)부터 즉시 업무 가능한 자 * 참조: [별첨1] 자격요건
우대사항	· 수질환경·폐기물처리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 참조: [별첨3] 입사지원서 “우대사항”
가점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장애인 * 참조: [별첨2] 채용시험의 가산비율 및 [별첨3] 입사지원서 “가점사항”

4. 전형절차 및 방법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2.1.(목) ~ 2024.2.16.(금) 17:00까지(※ 시간 엄수)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접수(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응시 지역	근무지	인원	접수처	담당자 및 연락처	근무지 주소
강원	강원환경본부	1명	youkyunghyun@keco.or.kr	유경현 대리 033-240-9522	춘천시 경춘로 2370, 8층

※ 제출서류 (별첨 3 참고)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명 필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 제출서류 모두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고 파일명에 성명 기재하여 제출하며, 제출 파일명에

제출자 지원분야 및 성명 기재(ex. 환경(수탁폐수)_김환경)

○ 유의사항: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 사진, 성별, 연령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서류전형

○ 평가방법: 자격사항, 우대사항, 가점사항,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 선발

※ 동점자 발생으로 3배수를 초과한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 합격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4년 2월말 예정(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우대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증빙서류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에서 증빙서류 제출

□ 면접전형

○ 일시/장소: 서류합격자에 개별 통보, '24년 2월말 예정(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방법: 업무수행역량, 지식·능력,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면접위원 평균점수 6할 이상(가점 포함)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 동점자 처리(선순위)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비율이 높은 수) <면접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합격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4년 2월말 예정(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4년 2월말 예정(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선정: 입사포기 등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에서 선정(단, 채용예정인원이 1인일 경우 2배수 운영)

※ 예비합격자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한하여 적용

5. 제출서류

□ **입사지원 시** [별첨3: 지정양식]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 [별첨3: 지정양식] 작성하신 후, 스캔파일 1개(PDF 등)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 지정양식 미준수 및 일부양식 누락 시 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 **면접전형 시(서류전형 합격자)** **입사지원서의 증빙자료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별첨2 참고)
- 경력증빙서류(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 운전면허증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사항 증빙서류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경력단절여성은 사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은 수급자 증명원(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그 외 채용담당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과 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

- 주민등록초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본) 원본 1부.
- 그 외 채용담당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간
- 신청방법: [별첨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응시원서 접수 이메일로 신청
 -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 홈페이지·전자우편 제출 또는 공단의 요구없이 자발적 제출한 경우는 제외

6. 기타사항

◆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준수하므로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개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견 시 임의 블라인드 처리 등)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도 임용을 취소합니다.
- 각 전형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이메일로 개인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한편, 응시자의 전형 단계별 개인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공단 인사규정 상의 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전·후 신체검사 또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조회 등에서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환경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유경현 대리(033-240-95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별첨1] 자격요건

□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 별표2

구분	채용자격기준
촉탁라급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채용분야(환경)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함.

□ 촉탁라급 해당분야 및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해당분야 자격증
환경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 위 기재된 자격증 외에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채용분야(환경)와 관련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은 인정되며, 본인에게 유리한 최고자격 1개만 인정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p>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p>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제 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첨2] 채용시험의 가산비율(가점사항)

구분		가산비율
1.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서류·면접전형 각각 적용)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특별 가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 본인 * (만점의 3%)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만점의 3% 또는 5% (서류·면접전형 각각 적용)
3. 그 밖의 가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1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6개월 이상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점의 5% (서류전형만 적용)

- * (가점의 한도) 법정가점은 만점의 10%, 특별가점 및 그 밖의 가점은 만점의 5%
- * 경력단절기간 6개월은 공고일 기준 연속 6개월이상의 단절을 말함
- * 경력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고 월 미만은 절사함
- * 가점 대상자별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기 법률 조항 검색하여 확인가능